# 가스보일러 시공시 하자담보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 건설산업기본법 관련조항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가스보일러 하자담보기간:1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도시가스공급규정 관련조항

●서울시 공급규정

제13조 (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제12조제1항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사용시설(온수보일러 등 그 부대시설 포함)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시공자는 그 시공기록 및 도면(온수보일러 설치공사의 경우 온수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을 작성하여 당사에 교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제44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수요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②가스사용기기를 설치(교체를 표함) 한 후 처음으로 가스를 사용하고자하는 수요자는 당사에 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당사는 점검을 실시하여 시공상태가 제규정에 적합하며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공급 요청일로부터 1일이내에 가스를 공급합니다.

●경기도 공급규정

제15조(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스사용시설공사를 완료한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 규칙 제20조의 제반규정에 의한 시공기록 및 도면(온수보일러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전안전점검이 끝난 후 가스연소기기를 설치(가스소비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종으로 연소기를 교체한 종전의 수요자를 포함한다)하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회사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가스보일러 등(온수기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한 자가 관말연결공사를 시행코자할 경우 제1항의 시공기록을 회사에 제출하고, 하자이행보증증권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증권등을 수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전안전점검시 시공자가 하자이행보증증권 등을 수요자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가스보일러시공자 보험가입의무화 제도시행

## 가.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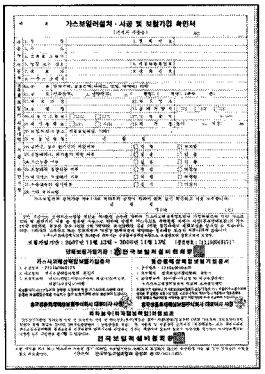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2003. 5. 27 법률 제6886호)으로 가스보일러 시공자에 대한 보험가입 이의무화됨.

▶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보험가입) ①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가 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 생략
2. - 생략
3.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공자

※ 보험가입 위반자 과태료 500만원 부과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②법 제43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공자는 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 도시가스사업자가 온수보일러 및 부대시설에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시공자의 보험가입여부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함. (별표11)

※ 시행규칙 제6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3억원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별표 17의2)

**도시가스 업무협약에 따른 보험가입 확인 필증(스티커) 제작 배포**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 기본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시공자의 법률상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우리협회 회원이 설치.시공한 보일러에 부착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각 지역에 배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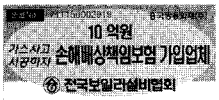


## 나. 보험약관

◈ 기본보상한도 : 대인배상 사망 1인당 8천만원 /재산피해 3억원 범위내 / 부상1인당 1천5백만원

▶ 보험기간 : 1년

▶ 보험기간 연장 :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보험증권만료일로부터 (12개월 연장)

(보험료 미납 등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 된 경우는 제외 됨)

▶ 특별약관 :

- 가스시설시공 작업 도중에 발행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가능.
- 사업 양도 시에도 보험이 승계됨

# 가스보일러 배기통 성능 인증 스티커 크기변경 알림

지난 9. 19(금) 개최한 2008년 가스보일러 사고예방대책 실무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가스보일러시설 안전점검 및 동 사고예방대책 추진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회원사 및 시공사 등에게 가스보일러 배기통 실치시 동 스티커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사항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 가스보일러 배기통 성능인증 스티커크기(15mm X 15mm)가 작아 식별이 곤란하여 크기 확대 또는 여러 장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요망 | 15mm X 15mm | 30mm X 30mm | 공사 성능인증업무지침 개정 (개정일: 2008. 11. 03) |

#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분류(군별) | 품목명 | 세부범위 |
|---|---|---|
| 1.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 없음 | |
|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① 온도조절기<br>② 온도과승방지장치<br>③ 써미스터<br>④ 자동압력 스위치<br>⑤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br>⑥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br>⑦ 에너지 레귤레이터 |
| | 비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을 제외한다. | |
|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 없음 | |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대상 없음 | |
|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대상 없음 | |
| 6. 절연변압기 | 가. 고주파웰더 | ① 고주파웰더 |
| | 나. 전기용접기 | ① 전기용접기 ② 권총형아크접착기 |
| |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의 것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2008.12.26 법률 제09245호]

### 제2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제11조**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 이라 한다)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이라 한다)를 면제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받아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3.28>

**제19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收去)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2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 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율안전 확인대상전기용품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파기 또는 수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이나 파기 또는 수거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언론매체 등을 통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위해성 공표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교환, 환불 또는 수리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장 벌칙

**제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2.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제5조제1항을 위반 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 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자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3.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제11조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4.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또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5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또는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 확인시험을 한 자
7.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8.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제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또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대상전기용품등 외의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7.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비치 한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8770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이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규정된 경우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하여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2010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접수 안내

- 귀하의 사업이 일익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난방시공업 분야에서 정격시공을 통한 에너지절약과 안전관리, 신기술 보급 등의 필요성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65조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50조에 의거 난방시공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 기한내 교육접수 바라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의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아 래 -

1.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교육
2. 교육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5조,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50조
3. 교육대상: 난방시공업 제1,2,3종에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자.
※ 난방시공업 제1종은 2명, 제2종 및 제3종은 1명 이상이 대상임.
4. 교육일자 및 장소
※ 접수자한 한하여 개별 통보함
5. 교육시간: 09시 ~ 17시
6. 교육비: 42,000(1인 기준)
7. 접수기간: 2010년 9월 25일까지
8. 교육신청 구비서류: 교육신청서 1부
9. 교육접수 및 문의처(중앙회 팩스 또는 인터넷 접수시 교육비 입금 계좌번호)

| 문의처 | 전화번호 | 팩스 | 홈페이지 | 계좌번호 |
|---|---|---|---|---|
| 전국보일러설비협회 | 02)3401-1497 | 02)407-3790 | www.nanbang.or.kr | 610-01-005141 농협 |

※ 교육신청서를 팩스로 송부시에는 수신여부 확인과 송금자 명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